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2019. 5.

계명대학교 교무처

1. 학칙 개정(안)

가. 개정사유

-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 2) 학교기업 티디비의 성서캠퍼스 이전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나. 주요내용

-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강사에 대한 내용 추가-제65조(교원의 구분 및 교수시간)
- 2) 학교 기업 티디비의 소재지를 성서캠퍼스로 변경-제87조의8(설립·운영)

다. 학칙 개정(안) 신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p>제65조(교원의 구분 및 교수시간) ① 우리 대학교 교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은 <u>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u>으로 분류한다. 2.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3. <u>비전임교원</u>이라 함은 명예교수, 초빙교원, 겸임교수, 특임교수, 석좌교수 및 객원교수 등을 말한다. 4.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으로 산학협력중점교원을 둘 수 있다. <p>② (생략)</p>	<p>제65조(교원의 구분 및 교수시간) ① 우리 대학교 교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은 <u>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및 강사</u>로 분류한다. 2. (현행과 같음) 3. <u>비전임교원</u>은 명예교수, 초빙교원, 겸임교수, 특임교수, 석좌교수 및 객원교수 등을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p>② (현행과 같음)</p>	<p>교원에 강사 추가</p> <p>문구 수정</p>
<p>제87조의8(설립·운영)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대학교 내에 다음 각 호의 학교기업을 두며, ‘스탠딩 에그 커뮤니케이션(Standing Egg Communication)’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로 하고, ‘티디비(TDB; Total Design for Bisa)’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티디비(TDB)’는 <u>패션마케팅학전공과</u> 연계하여 학교기념품 제작 및 판매를 사업 내용으로 한다. <p>② (생략)</p>	<p>제87조의8(설립·운영)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대학교 내에 다음 각 호의 학교기업을 두며, ‘그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티디비(TDB)’는 <u>패션마케팅학과와</u> 연계하여 학교기념품 제작 및 판매를 사업 내용으로 한다.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개정학칙은 201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	<p>소재지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p> <p>문구 수정</p>

2.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가. 개정사유

- 1) 복학 기간 변경에 따른 개정
- 2) 재수강 횟수제한 추가에 따른 개정
- 3) 출석인정 사유에 법정감염병 추가에 따른 개정
- 4)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졸업연기]를 [학사학위취득 유예]로 변경

나. 주요내용

- 1) 복학 기간을 학기개시일 전으로 변경-제15조(복학 및 재입학)
- 2) 재수강 횟수를 2회로 제한 하는 내용 추가-제24조(재수강)
- 3) 법정감염병 감염인 경우 최대 2주간 출석인정 내용 추가-제39조(출석인정)
- 4) [졸업연기]관련 용어 정리-제69조1(졸업의 연기), 제78조(학점등록)

다.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신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p>제15조(복학 및 재입학) ① 복학은 당해 학기 등록기간 중에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 ⑥ (생략)</p>	<p>제15조(복학 및 재입학) ① 복학은 당해 학기 <u>학기 개시일 전에 승인하</u>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복학기간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p>제24조(재수강) ① 과목번호 또는 과목명이 동일하며, 취득성적이 C+이하 인(F학점 포함) <u>경우에</u>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p> <p>②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과 그 전에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을 평점평균에 반영하며,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A⁰를 초과할 수 없다. <u>다만 학점포기 이후 재수강하는 경우에는 재수강한 성적을 인정한다.</u></p> <p>③ (생략)</p>	<p>제24조(재수강) ① 과목번호 또는 과목명이 동일하며, 취득성적이 C+이하 인(F학점 포함) <u>경우 최대 2회에 까지</u> 재수강할 수 있다. <u>다만, 재수강하여 F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u></p> <p>②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과 그 전에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을 평점평균에 반영하며,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A⁰를 초과할 수 없다.</p> <p>③ (현행과 같음)</p>	재수강 횟수 제한 학점포기제도 폐지에 따른 문구 정비
<p>제39조(출석인정) ① (생략)</p> <p>1. ~ 6. (생략)</p>	<p>제39조(출석인정) ①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비고
<p>7. 본인의 입원: 최대 2주간(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첨부) 8.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69조의1(졸업의 연기) ① 제69조의 졸업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교직복수전공, 부전공을 이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졸업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졸업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졸업연기는 최대 2회로 제한한다.</p> <p>② 졸업연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예정 학기 초에 졸업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졸업연기를 허가받은 학생의 등록금은 제78조와 제79조를 적용한다.</p> <p>제78조(학점등록) ① 8학기(다만, 의예과는 4학기, 건축학전공은 10학기)를 이수하고 졸업(다만, 의예과는 수료)에 필요한 소정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과 졸업연기를 신청한 학생 중 수강신청학점이 9학점 이하일 경우에는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 졸업논문(졸업시험, 작품발표, 졸업연주, 실기발표, 프로젝트발표, 공인외국어성적 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과 학과(전공)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 또는 졸업연기를 신청한 학생은 학기당 1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7. 법정감염병 감염 또는 본인의 입원: 최대 2주간(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첨부)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69조의1(학사학위취득 유예) ① 제69조의 졸업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최대 2회로 제한한다.</p> <p>②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받은 학생의 등록금은 제78조와 제79조를 적용한다.</p> <p>제78조(학점등록) ① 8학기(다만, 의예과는 4학기, 건축학전공은 10학기)를 이수하고 졸업(다만, 의예과는 수료)에 필요한 소정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과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한 학생 중 수강신청학점이 9학점 이하일 경우에는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이수했으나 졸업논문(졸업시험, 작품발표, 졸업연주, 실기발표, 프로젝트발표, 공인외국어성적 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과 학과(전공)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 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한 학생은 학기당 1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개정세칙은 201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	<p>출석인정 사유에 법정감염병 감염 추가</p> <p>졸업연기를 학사학위취득 유예로 변경하고, 관련 문구 정비</p> <p>졸업연기를 학사학위취득 유예로 변경하고, 관련 문구 정비</p>